

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7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

가.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

건설엔지니어링 명	과 업 량	사업비 (천원)	과업기간	비고
안망천 외 4개 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	실시설계 L=5.397km	1,048,800	3개월	

※ 해당 용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제1호에 따라,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경상북도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(계약금액)이 변경될 수 있음.

나. 건설엔지니어링 시행기관 : 경상북도

다. 입찰예정 시기 : 2026년 10월 (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)

라. 입찰방법 : 사업수행능력(PQ) 평가 후 가격입찰

2. 사업 수행 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

가. 참가자격

- 1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(종합)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(설계·사업관리-일반)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(설계·사업관리-설계등용역-설계등용역일반)으로 등록한 자
- 2)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(수자원개발, 토목구조, 토질·지질)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「기술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

따라 건설부문(수자원개발, 토목구조, 토질·지질)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

- 3)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**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**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**중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**를 소유한 자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규정에 따른 **직접생산확인증명서[제품명:지도작성법, 세부품명:측량용역(물품분류번호 : 8115160401)]**를 소유한 자

- 4) 토질분야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따른 중·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「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 및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규정에 따른 **직접생산확인증명서[제품명:지질학, 세부품명:지질연구조사서비스(물품분류번호 : 8115179901)]**를 소유한 자

※ 단, 중소기업(소기업·소상공인)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,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<http://www.smpp.go.kr>)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.

- 5) 상기 1), 2)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도급으로, 측량분야는 3)의 자격, 토질분야는 4)의 자격을 갖춘 1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(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), 분담 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됩니다.

- 실 시 설 계 : 공동이행방식(경북소재업체 49%이상 지분참여 권장)
- 측 량 : 분담이행방식(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)
- 토 질 : 분담이행방식(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)

과업분야	실시설계	측량	토질
비율	65.18%	23.92%	10.90%

[예시] 실시설계 부분 60%, 측량부분 23%, 토질부분 17%인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 : 33.3 : 16.7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

구 성 원 업 종	합 계	공동이행			분담이행	분담이행
		A사	B사	C사	D사	E사
합 계	100%	30.0%	20.0%	10%	23%	17%
실시설계 부분	60%	30% (50%)	20% (33.3%)	10% (16.7%)		
측량부분	23%	-	-		23%	-
토질부분	17%	-	-		-	17%

6)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·예시1 : A, B, C, D,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
 - 공동이행 : A + B + C, 분담이행 : D, E ⇒ 참여 가능
 ·예시2 : A, B, C,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
 - 공동이행 : A + B + C, 분담이행 : A, D ⇒ 참여 불가능

7)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,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나.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방법

- 1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.
- 2) 평가결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은 88.64점(100점 환산 기준)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.
- 3) 입찰 참여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.

3. 낙찰자 결정방법

가. 낙찰자 결정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·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(행정안전부 예규

제373호, 2026. 6. 29.)」에 따름.

- 나.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수행 능력의 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’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(1점)를 부여합니다.
- 다.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‘경영상태 평가’는 사업 수행능력(PQ) 평가 시 평가하므로, 배점한도(2점)를 부여합니다.
- 라.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, 구성원별 모두 평가함
- 마.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.
- 바.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1) 지역업체 합산비율 30% 이상 : 3점
 - 2) 지역업체 합산비율 30% 미만 20% 이상 : 1점

4.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

- 가. 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: 인터넷 게시로 갈음
 - 경상북도 홈페이지(<http://www.gb.go.kr>) “알림마당”에 게시
- 나. 참여 신청 및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
 - 1) 일 시 : 2026. 9. 29.(화), 13:00 ~ 17:00
 - 2) 제출장소 :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(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)
 - 3) 제출방법 : 직접 제출에 한함(우편, 팩스, 이메일 등 접수 불가)
- 다. 제출서류 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시행규칙 제28조 [별표2]에 규정된 사항 및 경상북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에 의거 작성 제출
 - 1)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, 참가자격 관련업 등록증 각 1부(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, 재직증명서)
 - 2) 공동도급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(공동도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)
 - 3) 참여기술인의 조직표 사본 및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사본 각 1부
 - 4) 사업수행능력평가서 : 1부(원본) 및 파일(PDF) USB 1개(업무중복도 포함)

5. 기타사항

- 가. 평가기준 교부는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고(과업지시서를 열람 후 참여) 별도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제출 시 대표 회사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나. 제출서류 작성은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다.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라.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는 경상북도 평가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.
- 마.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**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**하며,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바.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,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점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사. 건설엔지니어링 금액 중 직접경비는 “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580호)” 제11조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.
- 아. 기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(TEL:054-880-4089, 담당자 전호태 주무관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